

## 1. 개정이유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체납 사실 추가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할연금 청구 시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추가 안내 방법 규정(제11조)

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체납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 문서 발송 방식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함.

### 나. 분할연금의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제22조)

분할연금 혼인기간·분할비율의 신고기한을 분할연금 청구일 또는 별도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9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되돌려 보내지면”을 “송달되지 않은 경우”로, “내주거”를 “전달하거”로, “통지하여야”를 “재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알리거나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여금의 개별 납부를 받으면”을 “알리는 경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이후에도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이 통지되었음을 6개월 내로 추가 안내하며, 추가 안내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후에”를 “날 또는”으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30일”을 “날부터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후에”를 “날 또는”으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30일”을 “날부터 90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전자우편주소”를 “전자우편주소 또는 공단이 전

자정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시스템(이하 “공단 선정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 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e-mail)”를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 중 ““전자고지 신청”란”을 ““전자우편(e-mail)”란 또는 “공단 선정 정보시스템”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란에”를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또는 전자우편송부”를 “[ ] 공단 선정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e-mail)”를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법」 제9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1. “신청인 주소”란에는 “추납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납부예외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수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사업 중단·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을 적으십시오.
3. “적용제외기간”란에는 1999년 4월 1일 이후 괄호 안 대상자의 무소득배우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지급정지중인 자 제외), 국민연금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생계, 의료, 보장시설입소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4. “가입 전 군복무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추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추납희망기간”란에는 추납하고자 하는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6. “납부방법”란에는 희망하는 납부방법을 적으시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희망 횟수를 적으십시오.

※ 분할납부의 경우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7.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우편(e-mail)”란 또는 “공단선정 정보시스템”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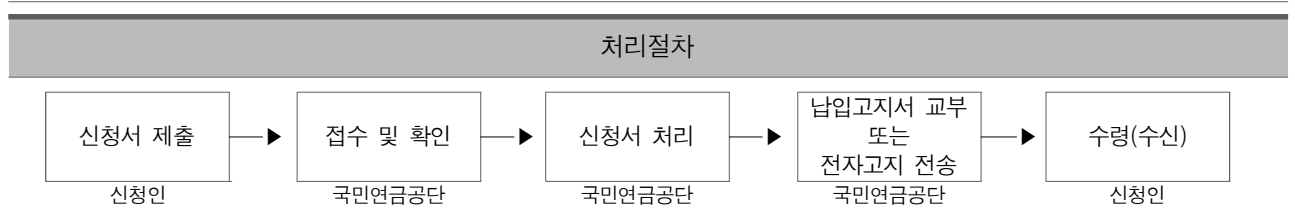
8. “자동이체 신청”란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수협 등의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금액에 비하여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 잔액에 대하여는 출금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사항은 당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까지 처리된 경우 당월분부터 적용되며, 해지 시에는 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완료 또는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

- 출금은 해당 납부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의 거래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자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는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전자우편 전송”을 “[ ] 공단 선정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날 또는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 결정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지급기간 중, 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 최대 [    ] 회 * 보험료 지원은 실제 구직급여 지급일수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4 참조)	
고지서 수령방법 *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우편고지 <input type="checkbox"/> 전자고지(e-mail) / 전자우편주소: _____ <input type="checkbox"/> 공단 선정 정보시스템	
자동이체 신청 [희망시 작성]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내용			
			연월일 (YYYY.MM.DD)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용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일자(국민연  
금·건강보험만 해당) 8. 취득 취소(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9. 상실 취소(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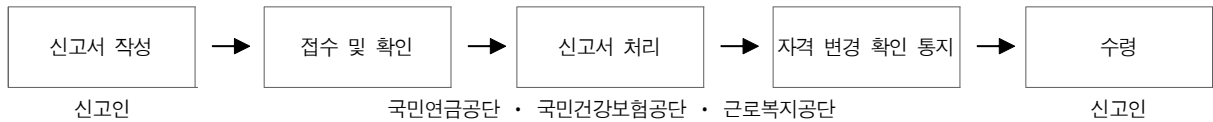
### 유의사항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자"를 변경 신고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취득 취소", "상실 취소"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확인서(취득·상실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시 생략 가능)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자격취득일자" 및 "자격상실일자" 변경 신고 및 "취득 취소" 및 "상실 취소"를 신고할 경우, 변경 후 변동일이 변경 전 변동일로부터 전후 6개월 초과하거나 기존 처리일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취득 취소" 또는 "상실 취소"의 경우, '변경 전'란은 종전에 신고하였던 취득일자 또는 상실일자를 적고, '변경 후'란은 99991231로 적습니다.
  - (예) 취득 취소 - 변경 전 / 변경 후 : 20210201 / 99991231

### 처리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 ]가입기간 추가 (실업) [ ]반납금 전자고지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추납보험료 [ ]환수금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회사)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		
신청사항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철회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 _____ [ ] 공단 선정 정보시스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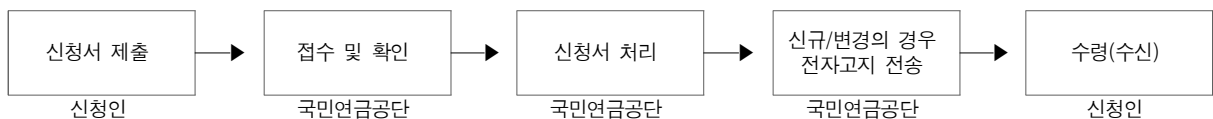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료 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및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으십시오.
3. “신청내용”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4. “신청내용”란에서 “신규” 또는 “변경”란에 “√”표시를 한 경우 중 전자우편(e-mail)란에 “√”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주소”란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체납 사실의 통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u>법 제17조제3항에 따라</u>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지문서가 <u>되돌려 보내지면</u> 해당 가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u>내주거나</u>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주소지나 그 밖에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에 등기우편으로 <u>통지하여야</u> 한다.</p> <p><u>&lt;신 설&gt;</u></p>	<p>제11조(체납 사실의 통지) ① --- ----- ----- ----- <u>법 제90조제4항</u>-----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u>송달되지 않은 경우</u> ----- --- <u>전달하거</u>----- ----- ----- ----- <u>재통지하여야</u> ---.</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이후에도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u> 건강보험공단은 <u>법 제90조제5항에 따라</u>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이 통지되었음을</p>



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분할 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 ⑩ (생략)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①·② (생략)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 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보통신망의 문제 등으로 전자고지

----- 날부터 90  
일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날 또는  
----- 날부  
터 90일 -----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  
은 전자우편주소

2. (생략)

④ ~ ⑦ (생략)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법 제9  
5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  
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5에 따른다.

-----  
-----.

1. -----  
-----  
-- 전자우편주소 또는 공단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3조제2  
항에 따라 선정한 정보시스템  
(이하 “공단 선정 정보시스  
템”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  
----- 「국  
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  
-----.